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관세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제도 개선사항 보완 -

관세청에서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며 의견제출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사유

-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한 사항 규정
- 청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 지정 (제25조⑥·⑦)

-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관세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일선세관 지정

현행	개정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 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신 설>	⑥ 영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신 설>	⑦ 영 제144조의6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두는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는 별표 2와 같다.

2.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 명확화 (제14조①·④)

- 처분청의 직권시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 *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불복 계류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 결정된 경우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현행	개정
제 14조(직권시정)	제 14조(직권시정)
① 처분청은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청구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권시정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정하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미 심사청구서를 관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신 설> <신 설> (중략)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사안이 심사청구(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포함)와 심판청구가 동일한 내용·쟁점·적용법령으로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건이 인용결정된 사안인 경우 5. 품목분류에 관한 불복청구 처리절차가 진행되다가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품목번호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6. 그 밖에 세관장이 직권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중략)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전진단 절차 마련 (제20조⑤, 제25조④, 제26조④)

-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이 관세불복 청구인 및 대리인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절차 마련

현행	개정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제 20조(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① ~ ④ (생략) ⑤----- ----- -----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중략)

현행	개정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5조(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일선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결정부서의 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① ~ ③ (생략) ④-----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중략)

현행	개정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제26조(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본부세관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세관운영과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영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① ~ ③ (생략) ④----- -----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전진단서를 통해「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 제5조 및 영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 (중략)

4. 기타 개정사항

- 관세불복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해 회의장 출입 및 의견진술 가능하도록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 신설 (제17조④)
- 이의신청 결정 후 심사청구시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상이하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명확히 안내 (제24조의2)

현행	개정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제 17조(심의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의견진술 안내에 따라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에 관세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u>우편, FAX 등으로</u> 제출하거나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① ~ ③ (생략) ④----- -----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진술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불복대리업무 담당지정서를-----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중략)

현행	개정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제 24조의2(결정 지연에 따른 불복방법의 통지)
처분청은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불복방법 통지서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관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략)	-----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중략)

III. 시행일자

- 2023. 07. 01

IV.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 박노명 사무관(042-481-7804), 정기용 주무관(042-481-7778)
- 제출기한 : 2023. 5.
- 제출방법 : 내부메일 및 외부메일(tigmiru74@korea.kr)

| 첨부파일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붙임2]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3]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신규대조표

|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강민아 컨설턴트

T 070-4353-1555
E maka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